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대상단지 : 오산가장,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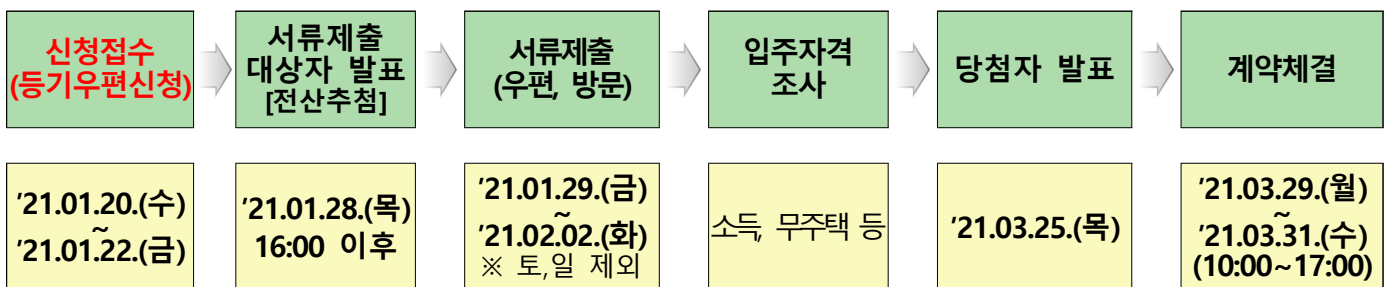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 12. 30.]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에 따라
공실주택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12.30(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 단지는 **수도권역(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만을 입주자격으로 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적용배제, 단독세대주 신청면적 제한 없음)

- 본 모집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나, 경쟁 시 [6.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따릅니다.
- 본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최초계약(2년) 이후 1회만 재계약(2년)이 가능(2+2년)**하나, 재계약 만료 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본 공고문내 2개의 단지 중 한 개 단지의 한 개 공급형을 선택하여 신청)
- 입주자 선정절차



※ 신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신청(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며, '21.01.22.(금) 소인분까지 인정

- 접수, 서류제출, 계약장소

단지명	구분	주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	신청접수 (우편, 방문) 계약	(우편번호 18103)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375-3 오산가장 행 복주택 관리사무소	031-234-8511
	서류제출 (우편, 방문)	(우편번호 18385)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 반월자이에 뜨 상가동 1층 임대관리팀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신청접수 (우편, 방문) 계약	(우편번호 16096) 경기도 의왕시 삼동 160-27 의왕역 행복 주택 관리사무소	031-8039-6116
	서류제출 (우편, 방문)	(우편번호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 성남판 교 경기행복주택 임대관리센터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 신청접수 및 계약 장소와 서류제출 주소가 상이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주택유형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건물층수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	행복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375-3	50	'20.02	6층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행복	경기도 의왕시 삼동 160-27	50	'20.02	7층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유형	주택구분	세대당 계약면적(m²)					난방	모집호수 (33)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오산가장	행복	21A	21.5000	13.3654	7.1732	17.6314	59.6700	개별난방	27	
		21B	21.5900	13.2915	7.2032	17.7052	59.7899		2	주거약자용
의왕역	행복	29A	29.4600	14.1896	4.5058	-	48.1554	개별난방	3	
		29B	29.4600	14.1896	4.5058	-	48.1554		1	주거약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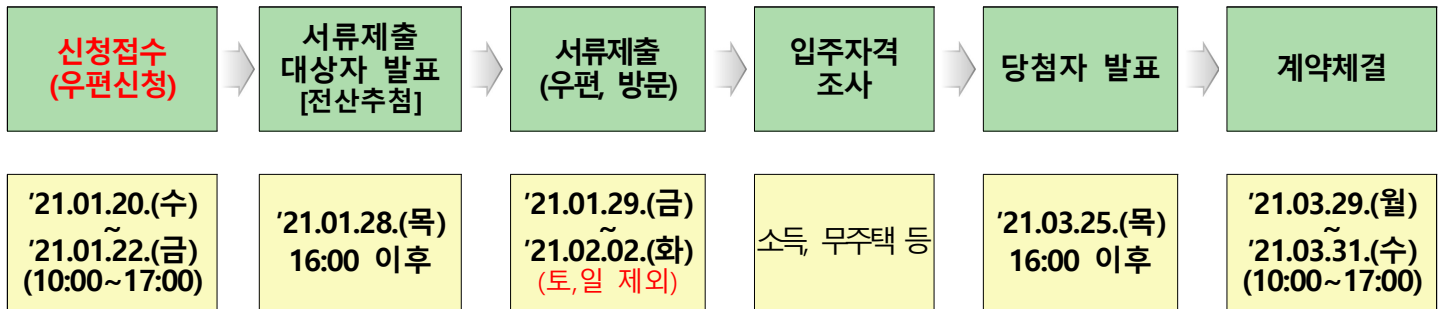
- 금회 모집은 **모집호수만큼 입주자를 선정**하며, 미달된 호수가 있을 경우 추후 재공급 예정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주택 중 입주개시 후 3개월 이상 공실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는 금회 모집 대상자에 포함하여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3. 임대대상 및 조건

단지명	주택 유형	주택구분	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10%)	잔금(90%)				
오산가장	행복	21A, 21B	신청자 전체	40,704	4,070	36,634	52,570	(-) 36,000	4,704	127,570
의왕역	행복	29A, 29B	신청자 전체	78,080	7,808	70,272	78,080	(-) 70,000	8,080	223,910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 증액)은 불가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모집일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시 모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편(등기)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신청접수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 단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신청** 가능하며 '21. 1. 20(수)~1. 22(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방문신청 장소 >

단지명	주소	신청문의 번호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375-3 오산가장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031-234-8511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경기도 의왕시 삼동 160-27 의왕역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031-8039-6116

- * 신청자가 신청(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기재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대구성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현황 게시) 주택단지별 접수현황은 신청접수 마감 후 공사 임대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확인방법 :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상단의 『청약정보』 → 『공지사항』클릭 → 해당 게시물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당첨자 발표) 공사 임대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확인방법 :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상단의 『청약정보』 → 『공지사항』클릭 → 해당 게시물 선택

5.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에 거주하는 사람**

-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개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4.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table border="1" data-bbox="233 1120 1434 1516"> <thead> <tr> <th>세대구성원</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td></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body> </table>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33 1590 1434 1897"> <tbody> <tr> <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r> <tr> <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 <tr> <td>태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td></tr> </tbody> </table>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 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

■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주거약자” 란?

본 모집 공고 요건을 충족하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6. 입주자선정기준 등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는 **아래의 선정순서를 따름**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이하 장애인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초과	선정 순서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가 우선하여 당첨자로 결정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거약자가 아닌 세대를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소득 기준(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	1,322,574원 이하	1,851,603원 이하	2,645,147원 이하
2인	2,189,905원 이하	3,065,866원 이하	4,379,809원 이하
3인	2,813,449원 이하	3,938,828원 이하	5,626,897원 이하
4인	3,113,171원 이하	4,358,439원 이하	6,226,342원 이하
5인	3,469,177원 이하	4,856,848원 이하	6,938,354원 이하
6인	3,797,042원 이하	5,315,858원 이하	7,594,083원 이하
7인	4,124,906원 이하	5,774,868원 이하	8,249,812원 이하
8인	4,452,771원 이하	6,233,879원 이하	8,905,541원 이하

■ 소득산정방법

소득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거나 신청 정보와 달라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0.12.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2.30)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며,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 : 정부24 (www.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열람/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서류제출기간**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1.01.29(금) ~ 02.02(화) (토, 일 제외)**
- ※ 방문 제출 시 토, 일요일은 제외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접수
- 서류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제출 주소

단지명	주소(등기우편, 방문제출)	전화문의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	(18385)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 반월자이에프 상가동 1층 임대관리팀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031-234-8511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임대관리센터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031-8039-6116

※ 서류제출 장소는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와 상이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은 **'21.02.02(화) 소인 분까지 인정**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내 용	부수
신청서 (붙임 서식)	• 신청자 작성 제출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세대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 이혼, 사별 등 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1통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구비서류	내 용	부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표기)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신청자 포함)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급여수급 증빙이 필요한 경우	1통
임신진단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1통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소득70% 이하자로 장애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1통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붙임 서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붙임 서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 현장방문시 준비서류 - 당사자 2인 모두 방문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 당사자 1인만 방문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미방문자의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1통

■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기본제출 서류로 같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 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 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본인 또는 대리인 현장 신청(계약)시 확인서류

신청 구분		준비 사항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신청자 본인 신분증 ② 신청자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때 (방식 택1)	인감증명 방식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② 위임장(별지 2서식)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③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자필서명 방식	①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본인(신청자)의 도장 ③ 위임장(별지 2서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으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미성년자가 현장 신청(계약)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신청 구분		준비 사항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신청자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②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3서식) 및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③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④ 본인(신청자)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당첨자 발표 (2021.03.25. (목) 16: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연기 시 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별도 게시됩니다.

■ 방문 계약

단지명	계약체결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장소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	'21.03.29(월) ~ '21.03.31(수) 10:00~17:00	'21.04.1.(금) ~ '21.04.31(일)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이내에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 가능	오산가장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375-3) 의왕역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경기도 의왕시 삼동 160-27)

※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연기 시 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별도 게시됩니다.

※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계약 일시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만 가능함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장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9.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청약신청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과 관련하여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니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입주안내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u>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u>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갱신계약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갱신계약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갱신계약 시 소득수준 변경(소득 100% 초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12. 지구 및 단지 특성 및 유의사항

■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

-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북측으로 25미터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은 총 50세대로 구성된 오피스텔(공공준주택)입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44대로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지상2~6 공용공간(계절옷장, 공용거실, 공용세탁실)과 체력단련실, 독서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에 따라 단지내 출입구옆에 설치되어있으며, 지정된 주거용 쓰레기분리수거장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运行时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 주거약자형 세대는 2층~6층 1세대씩 총 5세대로 계획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동 옥상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 하여 이사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비난방구역으로 실외기실에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지상 일부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예정입니다.
- 행복주택 홍보관,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합니다.
- 붙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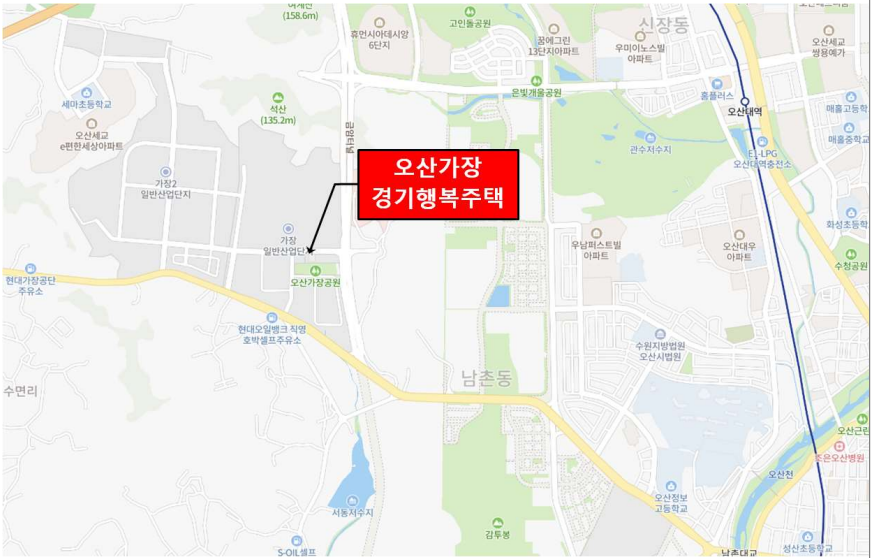
■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측으로는 10미터, 북측으로는 8미터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은 총 50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의왕시립 어린이집)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입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상1층~지상2층에 설치된 시립어린이집으로 인한 소음 등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28대로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지상2 공용공간(공용주방, 공용거실, 공용세탁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지상2층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단지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에 따라 단지내 출입구옆에 설치되어있으며, 지정된 주거용 쓰레기분리수거장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 주거약자형 세대는 3층~4층 4세대씩 총 8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의 그릴창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함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동 옥상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소음이 날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 하여 이사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축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축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지상 일부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재, 단지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예정입니다.
- 행복주택 홍보관,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합니다.
- 붙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설계상 문짝과 바닥사이에 틈이 발생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13. 방문신청 및 계약장소 위치

단지	구분	위 치
오산 가장	현장 접수처 및 계약장소 - 운영기간 * 신청접수 : '20.01.20.~ '20.01.22. [10:00~17:00, 휴일 및 점심시간제외] * 계약 : '20.03.29.~ '20.03.31. [10:00~17:00, 휴일 및 점심시간제외] - 상담전화 : 031-234-8511 - 장소 :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38]	
	※ 주의: 자격심사서류 우편제출자는 아래주소로 발송 - 우편번호 18385,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성로 394 반월자이예트 상가동 1층 임대관리팀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의왕역	현장 접수처 및 계약장소 - 운영기간 * 신청접수 : '20.01.20.~ '20.01.22. [10:00~17:00, 휴일 및 점심시간제외] * 계약 : '20.03.29.~ '20.03.31. [10:00~17:00, 휴일 및 점심시간제외] - 상담전화 : 031-8039-6116 - 장소 :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의왕시 삼동160-27]	
	※ 주의: 자격심사서류 우편제출자는 아래주소로 발송 - 우편번호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임대관리센터(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문의처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	031-234-8511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031-8039-6116

2020. 12. 3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경기주택도시공사라 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신청자격별 세대구성원 범위 확인후 전원 서명 (여비신흡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자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 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보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 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 (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

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 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 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8. [선택]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등 기타 임대주택 정보를 수신받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 주의 : 아래 본인포함 작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신청서(전세형)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자격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순위	☐ 1~3순위가 아닌 자		
	무주택 여부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		
신청지역	현재 거주구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인천·경기		
	신청 단지 및 공급형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본 공고문내 2개의 단지 중 한개 단지의 한개 공급형을 선택하여 신청)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	☐ 21A	☐ 21B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 29A	☐ 29B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		
		-		
		-		
		-		
		-		
		-		
		-		
자격 검증	<자격검증> 1. 무주택여부 및 소득검증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 소득 등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본인은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경기행복주택의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1) (대표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신청인(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 신청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 경기행복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 정보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 경기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 경기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경기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지정기간만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분
본인		-		동일세대 ☐ 분리세대 ☐
배우자		-		
		-		
		-		
		-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동의서

계 약 대 상 : []행복주택 동 호

상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에 동의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향후 해약시에도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계 약 자 주민등록번호 : _____
성 명 : _____ (날인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감날인)

20 . .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각1부.

※ 담당자 확인사항

1.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은 필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 할 것.
2. 법정대리인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한 인감증명서 수령하여야 할 것.
3.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부모의 부존재 확인해야함.
4.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 판결서로 증빙을 받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5.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위임장(인감날인) 추가 수령.

※ 동의서 징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인감도장
- *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인감날인한 위임장 추가
- * 친권자가 아닐 경우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판결 요망

[붙임]

위 임 장 (신청용, 계약용)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위 임 인(본인, 위임하는 분)

성 명 :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행복주택**(신청·계약)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수 임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